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-0043호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3일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
### 「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 등 14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제정 이유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공통 또는 특수분야에서 준수해야할 추가적인 기술요건을 규정하여 공인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인정기구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○ 「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○ 「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역학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○ 「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전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○ 「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○ 「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관능시험 분야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및 관련 직원에 세부 해석 지침 제공

○ 「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EMC(Electromagnetic Compatibility) 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○ 「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사업장소재지,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○ 「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
-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- 「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  - 경마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- 「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  - 식품시험기관이 인정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- 「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  - 식품 중 유전자변형성분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 시험기관으로 인정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- 「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  - 법과학 분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- 「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  - 소프트웨어 평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는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- 「국방(방산)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
  - 국방(방산)분야 시험기관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

### 3. 의견 제출

「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 등 14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7737)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

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

○ 전화 : 043 - 870 - 5496

○ 팩스 : 043 - 870 - 5679

○ 이메일 : kok0816@korea.kr